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19.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0호로 2023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의 구비 분담금, 법정 필수 경비,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의 편성을 위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내용

가.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006,489,950	845,581,136	160,908,814	19.03
일반회계	970,586,632	813,694,342	156,892,290	19.28
특별회계	35,903,318	31,886,794	4,016,524	12.60
의료급여	683,646	544,000	139,646	25.6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200	0	54,200	순증
주 차 장	33,587,505	30,547,502	3,040,003	9.95
건축안전	1,577,967	795,292	782,675	98.41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156,892,290천원

1)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970,586,632	813,694,342	156,892,290	
지방세 수입	193,111,153	216,834,446	△23,723,293	
보통세	192,395,581	216,118,874	△23,723,293	
지난년도 수입	715,572	715,572	0	
세외수입	81,660,367	81,660,367	0	
경 상 전 세외수입	67,219,150	67,219,150	0	
임 시 전 세외수입	9,495,937	9,495,937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945,280	4,945,280	0	
지방교부세	17,396,000	17,396,000	0	
조정교부금 등	86,532,775	86,532,775	0	
자 치 구 조정교부금	86,532,775	86,532,775	0	
보 조 금	373,834,827	365,746,168	8,088,659	
국고 보조금	215,524,800	212,851,977	2,672,823	
시·도비 보조금	158,310,027	152,894,191	5,415,83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8,051,510	45,524,586	172,526,924	
보전수입 등	218,051,510	45,524,586	172,526,924	○ 순세계잉여금: 153,436,667 ○ '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19,090,257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156,892,290천원

● 정책사업비 ----- 35,425,596천원

※ 주요 사업 편성 내역

동청사 시설보수(여의동, 영등포본동, 신길7동)(자치행정과)	97,820 천원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조성(자치행정과)	230,858 천원
지역문화축제 지원(문화체육과)	22,000 천원
동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문화체육과)	54,000 천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 시설 건립(문화체육과)	2,274,000 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지역경제과)	2,000,000 천원
선유도서관 리모델링 및 문래도서관 환경개선(미래교육과)	1,502,000 천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복지정책과)	42,000 천원
하정어린이집 리모델링(보육지원과)	433,031 천원
산후조리경비 지원(보육지원과)	982,000 천원
경로당 중식비 지원(어르신장애인과)	455,700 천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 정산인 수당지원 (어르신장애인과)	153,000 천원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어르신장애인과)	173,000 천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어르신장애인과)	121,380 천원
빗물관리시설(띠녹지)조성(푸른도시과)	500,000 천원
여의도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푸른도시과)	500,000 천원
반지하주택 차수시설 설치(치수과)	200,000 천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교통행정과)	144,000 천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교통행정과)	31,000 천원
공동주택 관리지원(경로당 개보수)(주택과)	200,000 천원
경부선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도시계획과)	300,000 천원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도시계획과)	50,000,000 천원
손해배상금(조선선재 착공반려 관련)(건축과)	12,083,446 천원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법창 설치(건축과) 700,433 천원
 의회 청사 관리(회의실 조성)(의회사무국) 77,000 천원

- '22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0,674,577천원
- 예비비 ----- 16,097,366천원
 - ▶ 일반예비비: 2,800,000천원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297,366천원
- 행정운영경비----- 899,164천원
 - ▶ 인건비: 614,416천원
 - ▶ 직급보조비: 302,446천원
 - ▶ 연금부담금 등: △17,698천원
- 기금전출금 및 예탁금----- 83,795,587천원

나. 특별회계 ----- 4,016,524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139,646천원

- 세입
 - ▶ 순세계 잉여금: 108,312천원
 - ▶ 보조금 사용잔액: 31,334천원

- 세출
 - ▶ 보조금 반환금: 139,646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54,200천원

- 세입
 - ▶ 국고보조금: 54,200천원

● 세출

▶ 시설비: 54,200천원

■ 주차장 특별회계 ----- 3,040,003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2,983,356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56,647천원

● 세출

▶ 인력운영비: 10,962천원

▶ 예탁금: 2,971,203천원

▶ 보조금 반환금: 57,838천원

■ 건축안전 특별회계 ----- 782,675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731,958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50,717천원

● 세출

▶ 건축물 안전점검 등 사업비: 725,317천원

▶ 보조금 반환금: 57,358천원

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의회사무국	5,339,954	4,530,048	809,906	17.88

5. 검토의견

-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3,000만원에서 8억 1,000만원 증액된(17.88%) 53억 4,0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前 구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2021년 5월~2022년 6월) 소급금 5,200만원, 구민회관 3층 작은 도서관 운영종료로 확보된 공간과 정책담당관실 등의 현 구의회 청사 일부를 개선하는 의회 청사 공간 개선비 7,700만원, 2023년 1월 구의회 전입 직원(구의회 사무국장 외 8명)에 대한 보수와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별로 2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6억 5,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함.
-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